

#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讀解) 시도

정금식\*

1. 들어가면서
2. 법의 눈
3. 맺으며

## 1. 들어가면서

소설은 시대의 산물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사회상을 고발·비판하고 또 풍자한다. 독자들은 소설의 이러한 고발과 비판에 열광하였고, 그 때문에 소설은 더욱 널리 회자되었다. 또 고대소설은 집단창작의 산물로 이전의 작가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음 작가들이 추가하여 소설의 생명력, 즉 사회고발과 풍자를 확산하였다. <춘향전> 역시 작가들과 독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용을 풍부히 하였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리고 독자들이 그리는 이상(理想)에 대한 열망을 확신시켰다.

고전인 <춘향전>에 대해서는 국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지만, 법의 시각에서 다룬 것은 많지 않다. 고(故) 장경학(張庚鶴, 1916~2011) 선생은 1950년대에 이례적으로<sup>1)</sup> 법전 속의 고정된 법이 아닌 삶 속에 ‘살아 있는 법(das lebendes Rechts)’을 탐구하기 위해 춘향전을 분석하였는데, 유교윤리에 한정되지만 만민평등사상의 발로를 탐구하였으며, 법 집행자의 법준수에 대한 이중성을 비판하였다.<sup>2)</sup> 이어서 1967년에는 춘향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장경학 선생은 당시 법학계의 분위기에서 현행 법률이 아닌 <춘향전>을 다루는 것에 대한 자기변명을 하고 있다.

을 분석하여 “이조 후반기 법사상의 고찰”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를 법률신문에 연재한 후 1970년 을유문고(44)로 『법률춘향전(法律春香傳)』을, 또 이를 보완하여 『신(新) 법률춘향전』을 1997년에 간행하였는데, 동서문학에 나타난 해학과 법률적 쟁점을 소개하였다.<sup>3)</sup> 선생은 입법과 해석에서 민족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역사법학과(歷史法學派)의 입장에서 수용된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민족의 법감정에 적합한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정신의 탐구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춘향전>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정신이며 그 윤리 역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방관청을 무대로 전제관료제 하의 권위주의적 전단적(專斷的) 법적용을 비판하는 <춘향전>의 작가는 유교윤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법지식을 바탕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였다. 또 법률문제를 소설의 소재로 다룬 점에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법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영조·정조대의 형사사법의 개혁과 법전 편찬 등으로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조선의 정치원리는 유교사상을 내포하는 법제도에 의해 통치되는 ‘일종의 법치주의’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법전이 아닌 <춘향전>을 통해 민중의 법생활을 복원하였으며, 서민층의 법의식이 근대로 지향함을 밝혔다.<sup>4)</sup>

1970년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韓勝憲, 1934~) 선생은 <춘향전>을 계급적으로 일관하는 체제 긍정적 작품으로 보면서도, <춘향전>의 행복한 결말도 법에 의한 양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중간 법집행자의 이중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법 위의 법, 즉 자연법(自然法)을 믿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이는 초월성에 의지했기 때문에 민권의식의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체념과 현실도피를 방조하였다.<sup>5)</sup> 한승헌 변호사의 이러한 평가는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법률적 불법(法律的 不法, gesetzlich Ungesetz)’<sup>6)</sup>이 판치는 유신 치하의 1970년대 한국사회의 법적 현상에 대한

2) 장경학, 『春香傳의 法律學的인 接近(上·下)』, 『思想界』 1-8·2-1, 사상계사, 1953. 12·1954. 1 참조.

3) 장경학, 『新 법률춘향전: 동서문학·해학 그리고 법률...』, 법률출판사, 1997 참조.

4) 장경학, 『이조 후반기에 있어서의 법사상에 관한 일고찰』, 위의 책, 331-338면.

5) 한승헌, 『抵抗인가, 適應인가, 法律家가 본 <春香傳>』, 『문학사상』 20, 문학사상사, 1974. 5 참조.

6) 이계승, 『G. 라트브루흐의 法實證主義와 法律의 不法理論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sup>7)</sup> 김재문은 <춘향전>과 <이춘풍전>에 나타나는 법률문서를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였다.<sup>8)</sup>

오수창 선생은 <춘향전>에 나타난 법규와 현실의 괴리, 서술에서의 법의 활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춘향전>을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수령과 정면 대결하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sup>9)</sup> 그리고 조선후기의 일상이 <춘향전>에 반영된 양상을 책객(冊客)의 존재, 천자문의 위상, 암행어사의 봉고과직권(封庫罷職權) 등을 살피고, 이것들을 <춘향전>의 전승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sup>10)</sup>

“법과 문학”이 법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재에, 우리의 고전인 <춘향전>을 법의 시각으로 접근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sup>11)</sup> <춘향전>을 밀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현재에서, “《경관 춘향전》·《완관 열녀춘향수절가》”<sup>12)</sup>를 일독한 느낌을 바탕으로 법학에서 <춘향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야에 대한 시론적 단상을 던져 새로운 연구의 소재거리로 제공한다.<sup>13)</sup>

---

위논문, 1997 참조.

- 7) 유신치하의 법현실은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려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정을병의 단편소설 <육조지>에 잘 그려져 있다(『창작과 비평』 1974년 겨울호 수록).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선언적 표현이라면 ‘육조지’는 이를 넘어서서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8) 김재문, 『한국고전소설속의 法律文書: 춘향전·이춘풍전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고문서연구』 5, 1994에서는 고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인·소개하였다.
- 9) 오수창,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역사문제연구소, 2012 참조.
- 10)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참조.
- 11) 한국에서 “법과 문학”을 개척한 안경환 선생도 서양과 현대작품을 다루었을 뿐, 우리 고전은 다루지 않았다.
- 12) 이석래 역주, 『춘향전』, 범우, 2004 참조.
- 13) 재판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송사소설(訟事小說)’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분쟁의 해결이나 재판과정 또는 범인의 적발과 처벌과 신원(伸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현홍, 『朝鮮朝訟事小說研究』, 삼지원, 1997 참조). 따라서 <춘향전> 등 사회현실에 대한 소설은 송사소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2. 법의 눈

이미 오수창 선생의 연구에서 법과 관련하여 법규의 존재와 준수 여부 그리고 법에 대한 극중 인물의 활용과 태도 등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검토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춘향전>에 나타나는 법적 내용의 전체적 소개와 분석이며, 다음은 극중 인물의 법에 대한 태도이다. 물론, 후자는 오수창 선생이 어느 정도 다루었지만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2.1. 법지식의 확산

조선이 이전과 다른 점은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여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표방하였고, 따라서 통치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법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수교를 정리하고 법전을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사송유취(詞訟類聚)》,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등의 법서가 간행되었으며, 18세기 후반 법률서식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가 간행되어 법의 일상화 내지 생활화가 완성을 이루었다. <춘향전>의 10단계의 서사구조 중 3단계는 “이도령이 춘향을 불러 본 후 불망기(不忘記)를 써주고 사랑가로 함께 즐긴다”로, 춘향이 이도령에게 사문서(私文書)인 불망기를 요구하는 계통과 그렇지 않은 계통이 있는데, 비기생계 <춘향전>에서는 불망기 없이 자유연애적인 분위기가 강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망기계 작품”과 “비불망기계 작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14)</sup> ‘불망기(不忘記)’는 수기(手記)의 일종으로 약속 등을 할 때 주고받는 문서로 다짐(拷音)의 성격<sup>15)</sup>을 갖는 법률문서이다. 이처럼 법률문서의 존재, 즉 법은 <춘향전>의 계통을 구분하고 나아가 서사의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춘향전>에는 다양한 법률문서가 등장하고 있다. 13종의 <춘향전>을 분석한 김재문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문서가 나오는데, 만화본(晩華本),

14) 설성경, 『춘향전의 계통과 보편구조』,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1991, 57·62면.

15)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개정·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459·473면.

완판(完版) 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 신재효 춘향가에는 고문서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지 않고 있다.<sup>16)</sup> <춘향전>에는 “妓生冊案(妓案), 妓生都案, 題詞, 等狀/寡婦等狀, 物故狀, 經歷文書, 行中日記, 職牒, 完文, 文券, 馬牌, 鑰尺, 血書, 便紙, 祭文, 路文, 文符, 印兵符, 狀啓, 禮狀, 四柱單子, 발괄[白活], 文簿” 등의 고문서 명칭<sup>17)</sup>이 보이며, 사문서로는 주로 혼인계약서인데 “수기, 불망기, 수표” 등의 명칭으로 9종의 판본에 보인다. 또 공문서인 청원서로는 “原(冤)情, (所志, 白活, 等狀)·다짐” 등이 있는데, 수청거절(守廳拒絶) 발괄은 3종의 판본에, 형벌집행 전 춘향 다짐과 사또 제김[題音]은 9종의 판본에 보인다. 또 김재문 개인소장의 《장통송기(狀通訟記)》<sup>18)</sup>에는 <춘향원정(春香冤情)>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右謹言冤痛情由段 … 是妾有何罪過 至於嚴刑 今自獄中刻骨冤情曳枷 仰訴何去乎(이 삼가 올리는 원통한 사정은 … 이 첩에게 무슨 죄와 허물이 있어서 엄형을 받아 이제 옥중에서 뼈를 깎는 원통함에 칼을 쓰고 있으니 우르러 호소합니다)”이다. 이는 관행적 소지나 《유지필지》의 소지의 그것들과 형식상 동일하다.

위의 고문서들은 당시에 널리 사용된 것이다.<sup>19)</sup> <춘향전>의 전개에 법률문서가 널리 활용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문서를 통한 법생활이 일상화되어서 독자들이 수많은 법률문서를 낫설어 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도령의 구애를 받은 춘향은 이도령에게 “관가(官家)는 중문권시행(從文券施行)”이라면서 뒷날 배신할 것을 염려하여 다짜고짜 불망기를 요구하였다.<sup>20)</sup> 나아가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춘향은

16) 김재문, 앞의 글, 80~88·91~92면.

17)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서는 관문서(官文書)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지만, 사문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관행에 맡겼으며, 그 집적은 《유서필지(儒胥必知)》이다. 위에 인용된 문서명칭이 전부 고문서명칭은 아니지만 문체제기의 의미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18) 전주에서 기록된 것으로 효행장(孝行狀), 선정비문(善政碑文), 임자동 산송기(山訟記), 단자(單子), 동유문(洞諭文), 금지문(禁止文), 기우제축문(祈雨祭祝文), 상량문(上樑文), 신원(伸冤), 소지(所志), 소문(訴文) 부인열행정장(夫人烈行呈狀), 장문(狀文), 명문(明文) 등으로 있으며, <춘향원정(春香冤情)>은 단자에 있다(앞의 글, 88면).

19)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서는 관문서(官文書)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지만, 사문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관행에 맡겼으며, 그 집적은 《유서필지(儒胥必知)》이다. 위에 인용된 문서명칭에 대해서는 자세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문체제기의 의미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문서를 근거로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그것도 신분을 넘어서서—주장하였다.

이러구러 분명 못 데려 가겠소? 진정 못 데려 가겠소? 종내 아니 데려 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서 날 호리려고 明文하여 준 것 있으니, 소지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으로 原情白活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역성을 들어 落訟시키거든, 그 소지 添連하여 원정 지어 가지고 전주 감영 올라가서 巡使道께 議送하면 도련님은 양반인 고로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도라도 동시 양반 편을 들어 또 나를 낙송시키거든, 그 題辭 또 침련하여 가지고 한양 성중 들어가서 刑漢兩司, 사헌부, 사간원, 備局까지 모하오면 도련님은 사대부로 左講右囑 結連 있어 또 송사를 지우거든, 그 題辭 모두 침련하여 툭툭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로 촌촌길식 다니다가 돈 한푼씩 빌어 얻어 東矣塵에 들어가서 바리뚜경 하나 사고 紙塵으로 들어가서 장지 한 장 사 가지고 언문으로 上言 쓰되 심중의 먹은 뜻을 세세 成文하여 가지고,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로나 서교로나 陵幸駕動 하실 때에 문 밖으로 내달아서 만인총중 쉬었다가 龍大旗 지나치고 험년자개창 들어서고 홍양산이 떠나오면 가교에나 마상에나 한가로이 지나실 때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경 손에 들고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擊錘까지 하오리다.<sup>21)</sup>

위 내용은 춘향이 서울로 떠나는 이 도령에게,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예전에 만났을 때 자신에게 써준 명문(明文)—불망기(不忘記)—으로 소지를 지어 남원 원님, 전라 감사, 형조와 한성부, 사헌부, 사간원, 비변사에까지 소지를 올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왕이 거동할 때 상언(上言)·격쟁(擊錘)까지도 할 것이라며 울었다. 또 그 사이사이에 이도령이 집안을 배경으로 미약한 춘향을 억지로 폐소시킬 것이라는 당대 재판의 현실—송관(訟官)의 부패와 비리—을 고발하며 비꼬고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소송의 모습-제1심에서 격쟁까지, 권력자에 의한 판

20) 불망기(不忘記)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모년월일 춘향전 불망기라 우 불망기만은 … 일후 만일 배약하는 폐가 있거든 이차문기(以此文記)로 관변정사(官卞正事)라”(《경관 춘향전》, 이석래 역주, 앞의 책, 18면). 이 내용은 《완관 열녀춘향수절가》에는 보이지 않는다.

21) 위 인용문은 『조선시대 생활사4: 조선의 일상, 법정에서다』(역사비평사, 2013)의 『분쟁과 재판』을 집필하면서 이용한 자료인데, 현재 이용한 책을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결의 왜곡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당대인들의 법률지식의 수준이다. <춘향전>에는 서사의 전개에 법적 사실이 녹아들어 있고, 독자들은 이를 재미로 한편으로 현실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받아들이고 즐겼다. 현재,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작가들이 법을 다루는 것은 근래의 현상이다.<sup>22)</sup> 일반적 송사소설처럼 재치를 겨루는 내용이 아닌 <춘향전>에서는 법적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조선후기에 법지식이 일반민중에게 널리 확산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 2.2. 법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춘향전>에는 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과 오수창이 소개한 관원의 창기(娼妓)·읍비(邑婢)와의 동침 금지, 암행어사의 봉고파직, 대비정속(代婢定屬), 남원부사의 도임행정(到任行程) 등등 법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춘향전>에는 법의 내용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위법(違法)과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탈법행위<sup>23)</sup> 등의 모습이 잘 그려있다.

관원이 창기와 동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실제 이를 어겨 처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법규정 아니면 소설의 이야기 중 무엇이 당대의 현실일까, 아니 모두 허구일까? 소설의 작가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지방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꼰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실을 조롱하고 직접적으로 수령을 비난하고 나아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는 정치를 풍자하였다. 그리고 속으로는 현실이 법대로 규율되고 진정으로 애민정치가 실현되기를 꿈꾸지 않았을까? 당시 민중들은 현실의 신분적 장벽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나마 그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며 <춘향전>을 읽고 또 읽었다.

서사의 반전은 암행어사의 출두이다. 암행어사는 봉고(封庫)만이 아니라

22) 소설보다는 영화에서 법을 더 많이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도 더 크다. 그리고 공지영의 “도가니”에서 보듯이 소설이 영화로 되면 더욱 그러하다.

23) 탈법행위(脫法行爲): 법규정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고 우회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과직(罷職)’까지 하였다. 이미 오수창이 밝힌 것처럼 암행어사가 과직은 할 수 없었다. 관원의 출척(黜陟)은 오직 국왕만이 할 수 있고 관원은 의금부(義禁府)에서 처리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춘향전>에서는 어사가 과직까지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민초들의 바람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들은 탐관오리들이 현장에서 당장 사라지기를 바랐다. 국왕의 처분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것으로 몸에 와 닿지 않았다. 우리를 괴롭히고 피땀을 빨아먹은 탐관들이 눈앞에서 정치되기를 바랐고 작가는 그 요구에 응하였다.

<춘향전>에 묘사되는 여러 장면들은 법적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 춘향의 옷단장과 장신구, 월매의 집에 있는 수많은 기물들, 그리고 이도령의 옷치장, 이는 모두 사치품으로 국가에서는 사치를 지속적으로 금지하였다. 또 춘향을 고문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동원된 곤장(棍杖)과 주장(朱杖) 등 여러 장(杖)들이 이 역시 거듭해서 금지하였고,<sup>24)</sup> 또 여인에 대해서는 칼 착용을 금지하였다(女人勿枷; 영조 23년[1747] 수교). 그렇지만 소설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위와 같은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고, 작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내용 전개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역시 현실에 대한 풍자이다. 한편 <춘향전>에서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부자들은 국법을 무시하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이중심정을 표현하였다.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현실을 비판·조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꿈속에서나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춘향전> 속에 빠져들었다. 또 집장사령(執杖司令)은 겉으로는 수령의 명에 따라 제대로 장형을 집행하지만 몰래 춘향에게 매 맞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이 역시 부당한 수령에 대한 소극적 항거, 나아가 조롱이다. 이 이상의 항거가 있을까?

수령도 법을 이용하여 춘향을 겁박하고, 춘향 역시 법을 방패로 대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이도령이 천자문을 읽는 부분에 “조강지처 불하당(槽糠之妻 不下堂) 아내박대

24) 정조는 <흙흙전칙(欽恤典則)>을 반포하여 장을 정비하였으며, 곤장(棍杖)은 군문(軍門)에 서와 도적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심재우,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규장각』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참조).

못하나니 대동통편 법중 율”<sup>25)</sup>이 있다. 여기서 ‘대동통편’은 당시 시행되던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인데, ‘대전(大典)’을 ‘대동(大同)’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는 법[전]을 상하 백성이 두루 잘 사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즉 지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령은 법전의 법—실정법(實定法)—을, 춘향은 이를 넘어선 법—자연법(自然法)—무기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위법적 행위를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대 법현실에 대한 조롱이 아닐까? 법과 현실이 전혀 다른 현실을 소설에서 불법이 당연한 것으로 서술하여 조롱하고 풍자한 것으로 보면 <춘향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일까?

### 3. 맺으며

법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다. 또 조선시대에는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법은 백성을 위해야 하고 그들의 믿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良法美意)”고 인식하였다.<sup>26)</sup> 따라서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은 모두 공유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속담처럼 법은 힘이 있는 지배자들에게 더 가까웠다. 그러나 백성들은 피동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 그들 역시 자기를 위하여 법을 동원하였고, 나아가 법을 지키지 않은 수령을 힐난하고 조롱하였다<sup>27)</sup> <춘향전>에는 이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러나 <춘향전>에 나타난 법의 동원은 개별사건에 나타난 그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 의미를 갖는 것일 것이다. <춘향전>이 쉽 없이 개작되어 전승되어온 사실은 그 내용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 말 미국법학계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하나는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운동이다. ‘법과 문학’운동에서는 법의 근본속성을 강제가 아닌

25)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이석래 역주, 앞의 책, 86면; 천자문의 해당 내용은 “律呂調陽”이다.

26) 박병호, 『朝鮮前期 立法者의 法律觀』,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참조.

27) 정공식, 『1816년 求禮 文化柳氏家 所志에 대한 法的 考察』, 『고문서연구』 14, 한국고문서학회, 1998 참조.

대화와 설득으로 보고, 법은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는 수사적 행위로, 문학 적 기법의 하나인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연구 경향은 문학 속의 법(Law in Literature)에서 문학으로서의 법(Law as Literature)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문학작품의 법적 취급(Legal Treatment of Literature)이 있다.<sup>28)</sup> 그 동안 사실(史實)이 아닌 허구의 산물인 소설 등 문학작품을 史料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렇지만 문학작품은 개개인이 아닌 전체로서의 개인의 모습과 당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잘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편린이 아닌 집단의 모습을 그려야 하며, 당대인들이 환호한 문학은 가장 적절한 대상이다. <춘향전>에서는 ‘문학 속의 법’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후기 법생활 내지 법현상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춘향전>의 확산·전승 과정에서 법적 현상이 변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면 법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에서 법의 동원을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 즉 변하지 않는 민족의 심성<sup>29)</sup> -법의식, 법감정 등-에 대한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28) 안경환, 『미국지성사의 흐름: 법과 문학』,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참조.

29)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탈근대, 역사학은 어디로 가는가』, 서해문집, 2016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이석래 역주, 『춘향전』, 범우, 2004.

### 2. 저서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탈근대, 역사학은 어디로 가는가』, 서해문집, 2016.

李憲洪, 『朝鮮朝訟事小說研究』, 삼지윈, 1997.

장경학, 『新 법률춘향전: 동서문학·해학 그리고 법률...』, 법률출판사, 1997.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개정·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 3. 논문

김재문, 「한국고전소설속의 法律文書: 춘향전·이춘풍전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79~114면.

박병호, 「朝鮮前期 立法者の 法律觀」,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설성경, 「춘향전의 계통과 보편구조」,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1991.

심재우,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규장각』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35~153면.

안경환, 「미국지정사의 흐름: 법과 문학」,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오수창,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역사문제연구소, 2012, 341~372면.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震檀學報』 114, 진단학회, 2012, 25~49면.

장경학, 「春香傳의 法律學的인 接近(上·下)」, 『思想界』 1-8·2-1, 사상계사, 1953. 12, 163~172면·1954. 1, 94~105, 113면.

정공식, 「1816년 求禮 文化柳氏家 所志에 대한 法的 考察」, 『고문서연구』 14, 한국고문서학회, 1998, 99~122면.

한승헌, 「抵抗인가, 適應인가, 法律家가 본 <春香傳>」, 『문학사상』 20, 문학사상사, 1974. 5, 309~316면.

